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397
----------	-------

발의연월일 : 2023. 5. 31.

발의자 : 박정하 · 유경준 · 서일준

김학용 · 김정재 · 조은희

박수영 · 유상범 · 김희국

지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고, 항공 분야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는 국내운항 노선에만 적용되어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7개 항공사가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2005년 유엔기후총회에서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별도 관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총회에서 “국제항공 탄소상쇄 · 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의 이행을 결의하였고, 그에 대한 국제표준 및 권장사항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로 개정 및 채택되어, 2021년부터 각 회원국은 자국 항공사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출하고 기준선을 넘어서는 탄소배출량을 상

쇄하도록 하는 등 해당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

그동안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기준선을 초과 배출한 항공사는 없었으나, 최근 국제항공 부문의 본격적인 회복 조짐에 따라 2024년부터는 기준선을 초과한 탄소배출량에 대하여 상쇄의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후함.

이에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상쇄·감축 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쇄·감축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기운영자 등을 이 법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감축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자로 지정하고, 이행의무자는 승인받은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연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다. 환경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측정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의 표준방식에 부합하는 검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

-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상쇄하여야 할 상쇄의무량을 산정하여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이행의무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의무를 이행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운영자등 또는 검증기관에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측정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바.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이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
-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배출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18조).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운항”이란 한 국가의 영토에서 이륙하여 다른 국가의 영토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말한다.
2.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비행기를 말한다.
3. “항공연료”란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가목의 항공유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
 - 다. 가목 및 나목을 혼합한 연료

4. “항공기운영자등”이란 국제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5. “국제항공 탄소”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중 항공기가 국제운항 과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다만, 의료·소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운항에 따른 이산화탄소는 제외한다.

6.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 16의 표준방식에 부합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인정하는 등록부에 등재된 국제항공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7. “상쇄의무량”이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배출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전 세계 국제항공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이행의무자가 상쇄하여야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8.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인정하는 등록부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자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이 등재된 관리체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의 제·개정,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와 관련한 국제협약 및 외국 정부 등의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운영자등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 및 항공기의 연료 효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국내외 동향에 관한 사항
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별 이행계획 및 감축효과에 관한 사항

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감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제항공탄소관리협의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효율적인 감축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항공탄소관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탄소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제7조(이행의무자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운영자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여야 하는 자(이하 “이행
의무자”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최대이륙중량이 5천7백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인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운영자등이 이행의무자로 지정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 지정·고시된 항공기운영자등은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항공연료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 등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이하 “모니터링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 지정·고시한 항공기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운영자등에 대한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폐업 및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법」 제90조제9항에 따라 항공기운영자등에게 운항증명의 효력 정지를 명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운영자등에게 운항증명을 취소한 경우
4.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운영자등이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④ 이행의무자가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이행의무자의 권리와 의무 또한 승계된다. 이 경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이

행의무자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변경된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검증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의 표준방식에 부합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제9조(배출량의 측정·보고 등) ① 이행의무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연간 탄소 배출량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연간 탄소 배출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량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및 노선 등 운항정보에 관한 사항
2. 항공연료의 사용량과 종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측정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부터 배출량보고서의 검증을 의뢰받은 검증기관은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행의무자와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상쇄의무량의 산정·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간 상쇄의무량을 산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제9조제4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그 이행의무자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량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쇄의무의 이행·보고 등) ① 이행의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서 영구히 삭제(이하 “말소”라 한다)함으로써 상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상쇄의무량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상쇄의무의 이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상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말소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총량에 관한 사항

2. 말소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의 식별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쇄의무의 이행 검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부터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검증을 의뢰받은 검증기관은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행의무자와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의 보관) ① 이행의무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과 관련된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이행의무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제7조제2항,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보고서, 검증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운영자등 또는 검증기관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측정, 보고 또는 검증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상쇄의무의 이행 또는 검증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별 칙

제17조(벌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조사 등을 거부한 자
- ②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모니터링 계획을 요청받은 항공기운영자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 받은 이행의무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검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국제 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검증기관으로 지정·공고한 검증기관은 당시 지정한 지정기간까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으로 본다.

제4조(배출량의 측정·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항공기운영자등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한 배출량보고서를 부칙 제3조에 따른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에 따른 검증기관이 항공기운영자등이 의뢰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을 검증한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쇄의무량의 산정·통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행의무자에게 2021년 및 2022년의 상쇄의무량을 통보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및 2022년의 상쇄의무량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